

청주교육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규정

제 정	1997. 09. 30.
1차 개정	1997. 12. 24.
2차 개정	1999. 09. 04. 규칙 제1035호
3차 개정	2007. 11. 01. 규칙 제1190호
4차 개정	2013. 07. 26. 규칙 제1314호
5차 개정	2015. 06. 12. 규칙 제1384호
6차 개정	2016. 03. 30. 규칙 제1406호
7차 개정	2025. 09. 24. 규칙 제167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원은 청주교육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본 원”)이라 칭한다.

(개정 2007.11.1)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본 원을 운영함에 있어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개정 2025.9.24.)

제3조(위치) 본 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5(수곡동) 청주교육대학교 캠퍼스에 둔다.

(개정 2015. 6. 12.)

제 2 장 조 직

제4조(원장) ①본 원에는 원장을 둔다.(개정 2013.7.26.)(개정 2025.9.24.)

②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본 원을 대표한다.(개정 2025.9.24.)

③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신설 2025.9.24.)

제5조(조직) ①본 원에 행정실을 두고, 그 산하에 수영안전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영안전교육운영팀을 둘 수 있다.(개정 2025.9.24.)

②수영안전교육운영팀에는 수영 관련 스포츠 지도자 자격 보유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는 팀장을 둘 수 있다. 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신설 2025.9.24.)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①본 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9.24.)

②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9.24.)

1. 교육사업계획에 따른 계획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4. 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개정 2025.9.24.)
5. 규정의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8조(심의)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개정 2025.9.24.)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9.24.)

제 4 장 교육과정

제10조(과정) 본 원의 교육과정은 일반과정, 위탁과정, 수영안전교육 관련 과정, 그 밖의 필요한 과정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5.9.24.)

제11조(교육일정) 본 원의 교육 운영 과정의 등록 신청, 과정의 운영 시기 등 교육 일정은 원장이 각 과정별 수업 일정을 고려하여 정한다.(개정 2025.9.24.)

제12조(수업일) 삭제(2025.9.24.)

제13조(학습자) ①본 원의 학습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과정 또는 과목에 따라 학력, 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9.24.)

②본 원에서 학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접수기간 안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과정,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서 참여할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친다.(신설 2025.9.24.)

제14조(선발방법) 삭제(2025.9.24.)

제15조(교육과정 등) ①본 원의 학사 운영을 위한 세부 교육과정, 정원, 교육기간 및 주 교육일 수, 시간, 학습비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개정 2025.9.24.)

② 삭제(2025.9.24.)

제16조(학습비 등) ①본 원에서 학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9.24.)

②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준용한다.(개정 2013.7.26)

제17조(수료 및 수료증교부) ①본 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70%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 5 장 삭제(2025.9.24.)

제18조(자치회) ① 삭제(2025.9.24.)

② 삭제(2025.9.24.)

제19조(등록제한) 원장은 학습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9.24.)

제20조(포상) 학습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시 포상 할 수 있다.(개정 2025.9.24.)

제 6 장 회 계

제21조(회계연도) 본 원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2조(예산편성) ① 원장은 회계 시작 전에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3. 30.)(개정 2025.9.24.)

② 원장은 회계 종료 후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30.)(개정 2025.9.24.)

③ 본 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대학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개정 2015. 6. 12.)

제23조(수입원) 본 원 운영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학습비(개정 2025.9.24.)
2. 청주교육대학교 보조금
3. 삭제(2025.9.24.)
4. 기타수입

제24조(회계집령) 삭제(2025.9.24.)

제 7 장 세 칙(신설 2025.9.24.)

제25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본 원의 각 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9.24.)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199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정) 청주교육대학교공개강좌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406호, 2016.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677호, 2025. 9.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